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지방자치단체장)은(가)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사업의 연간 계획수립
- ② 공익활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활동비, 부대경비)
-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교육 활동
- ④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2조(위탁기간) “지방자치단체장”와 “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 운영 기간을 2024. 1. 1. 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수행기관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① 위탁사업은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12개사업 1,710명으로 아래와 같다.
 - 공익활동사업(9개사업, 1,130명): 행복스쿨 1사업, 행복스쿨 2사업, 행복스쿨 3사업, 따손영양맘사업, 실버공공기관지원사업, 실버체육시설지원사업, 실버복지시설지원사업, 실버도서관지원사업, 우리고을문화재지원사업
 - 사회서비스형사업(3개사업, 580명) : 할머니맘, 시니어연금가이드, 실버사회활동지원사업
- ② 대상 사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참여대상은 사업유형별 만65세 또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월 30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최대 월 60시간 활동을 원칙)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수행기관장”은 「지방재정법」 및 「김해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14조 및 15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각 단위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비용은 단위사업 참여 노인의 활동비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 ③ 각 공익활동 단위사업 참여 활동비(급여)는 1일 3시간 월30시간 근무 290,000원으로 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최소 주 15시간 월 60시간으로 월 최대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 하여야 한다.
- ④ 비용의 지급 시기는 ‘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활동 내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수행기관장”이 청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기별 지급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 “수행기관장”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무김
복지재
이사회
김해시
니어클럽
전용

노인

(공익활동) 사업신청 제반 서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비용)
 상담의견서, 참여자 명부 및 활동비 입금 계좌내역, 활동비 대장명부, 사업현황 보고,
 활동일지,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신청 제반 서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참여비용), 상담의견서, 참여자 명부 및 인건비 입금 계좌내역, 인건비 대장명부, 사업현황
 보고, 출석부,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상해 등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내 재해 및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수립, 교육실시 등 자체 방안을 수립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수행기관장”이 책임을 진다.

제7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
 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조치)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가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당해 연도 협약체결 해지, 익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수행기관장”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해약)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방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수
 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충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

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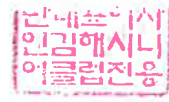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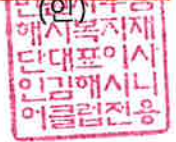
제12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3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인)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클린은모닝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클린은모닝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클린은모닝 사업
- 나. (위탁)사업내용 : 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493,95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은모닝서비스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청소대행업을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체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클린은모닝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123,488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123,487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123,488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123,487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장”과“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인)

-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은모닝택배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은모닝택배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은모닝택배
- 나. (위탁)사업내용 : 택배서비스업(아파트거점택배 및 정부양곡경로당택배)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10,68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은모닝택배는 택배서비스업으로 정부양곡경로당택배업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은모닝택배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2,670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2,670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2,670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2,670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칠암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칠암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칠암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칠암도서관 별관)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26,70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칠암도서관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칠암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6,675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6,675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6,675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6,675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장”과“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청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화정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화정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화정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화정글샘도서관 1층)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42.72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화정글샘도서관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화정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10,680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10,680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10,680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10,680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구산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구산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구산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1층)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26,70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구산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6,675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6,675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6,675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6,675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 “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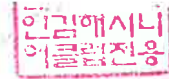
-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 “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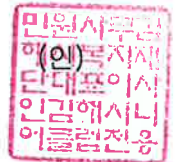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팔판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팔판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팔판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1층)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32,04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팔판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8,010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8,010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8,010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8,010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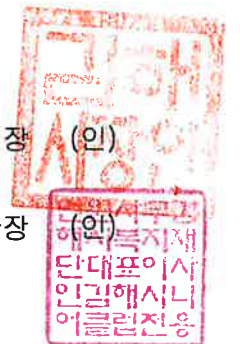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인)



-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석봉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석봉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석봉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장유1동행정복지센터)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16,02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석봉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4,005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4,005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4,005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4,005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장”과“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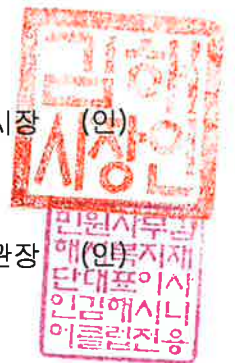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율하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율하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율하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목재문화박물관 내)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29,37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율하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7,342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7,342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7,343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7,343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

김해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김해시니어클럽관장(수행기관장)에게 『달보드레 장유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달보드레 장유점』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달보드레 장유점
- 나. (위탁)사업내용 : 커피 제조·판매(장유도서관)
- 다. (위탁)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라. (위탁)사업비 : 42.720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
-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 김해시 대표자 : 홍태용
“수행기관장” 기관명 :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대표자 : 박명아

② 사업수행범위

- 가. 달보드레는 커피 제조·판매업으로 화정글샘도서관 실버카페 운영
- 나.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함
- 다. “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거 수행

제2조(사업의 목표)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장’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달보드레 화정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1차 : 2024년 1월 20일, 10,680천원
- 나. 제2차 : 2024년 4월 20일, 10,680천원
- 다. 제3차 : 2024년 7월 20일, 10,680천원
- 라. 제4차 : 2024년 10월 20일, 10,680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마. 중대재해 예방 의무

1. “수행기관장”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행기관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④“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장”과“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김해시장 (인)



“수행기관장” 김해시니어클럽관장 (인)



-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